예 산 총 칙

2026년도 본예산

제 1 조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708,400,597	21,252,018
일반회계	634,700,000	19,041,000
특별회계	73,700,597	2,211,018
공기업특별회계	11,596,302	347,889
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	11,596,302	347,889
기타특별회계	62,104,295	1,863,129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1,010,047	30,301
주차장특별회계	339,000	10,170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2,815,987	84,48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20,135,080	604,052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790,362	23,711
치수사업특별회계	304,430	9,133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500,000	15,000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35,540,000	1,066,200
도시개발특별회계	500,000	15,000
비행장소음대책지원 특별회계	169,389	5,082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조서"와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2,000,000천원으로 한다.
일반회계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2,000,758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41,600,0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경비,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간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은 상호 이용할 수 있다.